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차량 운행제한 안내 협조 요청 (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1. 귀 조합(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2021년 소형차전용 지하도로(높이 3.0m 초과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차량,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차량의 운행을 제한)인 신월여의지하도로와 서부간선지하도로를 개통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운행제한 차량의 지속적인 오진입 사고로 인해 시설물이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하도로내 교통정체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3. 귀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에게 해당 내용을 다시 한번 공지하여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이를 어길시에는 도로법 제113조, 제114조 및 제117조 규정에 따라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같은법 제113조 및 114조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법 제116조에 따라 차주와 함께 회사대표 등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이 부과됨을 안내하여 화물 및 대형 차량의 오진입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수신자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개인중대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서울특별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주무관 김정식 민자사업팀장 김상우 도로계획과장 04/27 임창수

협조자 주무관 천주영

시행 도로계획과-21595 ((2022. 4. 27.)) 접수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73 /전송 02-2133-0763 / kjungsik@seoul.go.kr / 대시민공개